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시설·설비의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연구재료 등 교육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연구원·조교·대학원생·학부생 등을 말한다.
3.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및 점검기구 등에 의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 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5. “부서장”이라 함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속한 단과대학 또는 부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에 설치한 연구실에 적용한다. 단, 동산의료원 연구실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정책결정과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12. 6.)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심의) ① 위원회는 경영부총장, 교무처장, 관리처장, 연구처장, 자연과학대학장, 환경대학장, 공과대학장, 건축학대학장, 미술대학장, 패션대학장 등 당연직위원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12. 6, 2012. 4. 10, 2012. 8. 1.)

② 위원장은 경영부총장이 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2. 4. 10, 2012. 8. 1.)

③ 부위원장은 자연과학대학장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계획의 수립
2. 안전환경 기반시설
3. 연구실 사고 발생시 조사 및 조치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사고대책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사고 발생시 위원회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사고의 원인 및 책임소재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한다.

제3장 총괄부서 안전환경 조성

제7조(총괄부서의 임무) 연구실의 안전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리처 자원관리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개정 2012. 8. 1.)

1. 안전환경 조성 조직
2. 연구실 현황 파악 및 관리
3. 안전환경 점검 및 교육
4.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5. 건강검진 및 보험관리
6. 안전환경 조성 예산확보
7. 위원회 관련 업무
8. 기타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

제8조(안전환경 점검) ① 위원장은 안전환경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기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안전점검은 위원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체 또는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부서별 안전환경 조성

제9조(부서장의 임무) ① 부서장은 연구실의 안전환경조성에 대한 책임자로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 ② 부서장은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환경 정책과 안전환경점검 및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부서별 위원회는 소속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심의) 부서별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별 안전관리책임자 선정
2. 안전환경 점검 및 교육
3. 안전환경 조성 시설과 설비 관리
4. 사고 발생시 경위조사 및 사후대책 수립
5. 기타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 시작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할 내용과 기기의 취급, 조작요령 및 사고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숙지시켜야 한다.
-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개인보호구, 환기시설 등 실험에 필요한 보호장비 제공
 2. 연구실 안전환경수칙 부착 및 숙지
- ④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실은

안전조치 후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환경교육 수료 및 안전환경수칙 준수
2. 연구실 안전환경 일상점검을 매일 실시
3. 안전환경에 관련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제13조(안전환경교육) ① 부서장은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안전환경교육은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안전분야에 관한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안전환경 교육대상자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다.
- ④ 소속부서에서는 안전환경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매 학기초 안전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기교육을 연2회(12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는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안전환경 교육내용은 유해물질, 소방, 전기, 가스, 응급처치, 보호장비사용 등으로 하되 세부교육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안전환경교육 평가) ① 안전환경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안전환경교육 미이수자에게 교육을 참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 수료자에게는 실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유해물질 취급자) ① 유해물질 취급종사자는 연구실 이용에 따른 사고예방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실험폐액이 발생하는 연구실에서는 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방화, 전기, 가스 안전관리) 연구활동종사자는 방화, 전기, 가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사고조사 및 조치

제17조(사고조사) ① 안전환경 조성 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사고 발생시 소속부서장에게 안전사고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고 발생시 부서장은 사고 경위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조치) ① 위원회에서는 안전사고 발생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경미한 경우: 시정조치의뢰, 경고, 주의, 교육 및 훈련, 경위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중대한 경우: 경위서 제출, 연구실 사용제한 및 폐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고조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부서장에게 서면 통보한다.

제19조(연구실 사용제한) ① 소속부서장은 안전환경점검 실시 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 및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부서장은 그 사실을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험가입

제20조(보험가입) 부서장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환경안전관리규정』은 폐지하며, 동 규정에 의해 수행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